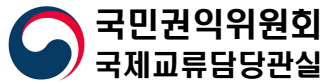

'18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

2018. 3



목 차

1.	2018년 제1차 G20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7
붙임 1	회의 일정.....	29
붙임 2	발표 자료.....	33
붙임 3	반부패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	41
붙임 4	이해충돌 방지 고위급 원칙 컨셉 노트.....	43

□ 회의 개요

- 회의명 : 2018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 일시/장소 : '18. 2. 27(화)~3.1(목)/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키르치네르 문화센터(CCK)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아르헨티나, 프랑스)**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IMF, FATF 등 국제기구 대표 및 CAF, CARICOM, Africa Union 등 지역 기구 대표
- ※ 권익위 :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법무부 : 이주현 검사(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교부 : 다자경제기구과 임보영 사무관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주요 결과

- 2018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공동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주도로 공기업의 청렴성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우선 순위로 선정, 동 주제에 대한 각국 우수사례 및 국제기구의 가이드 라인을 공유함.
- 향후 반부패실무그룹 운영방안에 대하여 참가국들은 반부패 고위급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
- 이에 따라 기존의 운영 방식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에 합의한 바, 공동의장국(아르헨티나, 프랑스)이 **구체적 운영방안을 작성하여 6월 2차 회의 전에 회람할 예정임.**

- 3 -

- **현 행동계획(Action Plan)을 유지하되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파기하고, 3년 이상(3~5년 등) 장기간 주기의 행동계획 체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에 합의함.**
- 장기 행동계획은 G20 의장국이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Work Program)으로 매년마다 보완됨.** 세르파 회의에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반부패실무그룹은 기존 반부패 행동계획의 8개 주요 의제에 대해 각국의 이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공기업 청렴성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도출하고, 2018년 G20 정상 회의에서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함.
- 회의 직전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고위급 원칙 컨셉노트’가 회람** 되었으며, 회의중 **‘공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고위급 원칙 초안 작성 방향’이 공유되었음.**

□ 정부 대표단 활동

-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 소개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을 각각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 유도하고 있음을 소개함.
- 또한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 청렴도 측정이 실제 부패 사건과 부패 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을 나타내는 수치를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함.**
- ※ 주요 질의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차이점 문의,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공기업 관련 부패사건 소개 요청 등

- 4 -

- ‘17년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에서 발표한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지 회람을 사무국측에 재차 요청하고, **근시일내에 질문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함.**
- 동 질문지는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의 의견 회람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 된 후, 국별 조사를 통해 자료집으로 출간될 계획임.

□ 관찰 및 평가

- 공동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주도한 공기업 청렴성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고위급 원칙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규제 정책, 기술 지원, 역량 강화)에서의 협력방안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제화 정도, 행동강령 또는 윤리적 차원의 접근 등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이 상이한바, 우리의 개정된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소개하는 등 차기 회의에 대한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7년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G20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는 ‘18년 우선과제(공기업 청렴도 향상)와 공통되는 주제인바, 금년도 조사 및 자료집 발간을 완료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임.
- G20 국가별 반부패 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에 대한 질문지가 사무국측 사정에 따라 사전 회람되지 않은바, 질문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답변을 받는 것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5 -

- 세션6 진행 중 의장국에 회원국 의견을 4월중에 접수하고 설문을 시작토록 협조를 요청한바, 의장(아르헨티나)이 검토 후 곧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주제로 열린 부대행사에서 발표된 우리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요청여부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전수 대상국 확대 검토** 가능함.
- 현 의장국의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의제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하여 독일, 인도네시아 등의 회원국이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언급한바, 6월 제2차 회의 의제 및 발제자 선정시 사전 논의 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

- 6 -

1. 공기업(SOE) 부패척결과 청렴제고에 대한 부대행사(2.27~28)

□ 개회

- 주최국 대표로서 Gustavo Lopetegui 아르헨티나 정책조정비서관, 공동의장으로서 Laura Alonso 아르헨티나 부패방지국 공공윤리 비서관과 Guillaume Chabert, 프랑스 공공재무회계부 다자업무 비서관, OECD 대표로서 Nicola Bonucci OECD 법무과장 겸 G20 반부패 실무그룹 OECD 대표가 개회사를 하였음.
- Lopetegui 비서관은 공기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제적 선진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각 국가별 내부 기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민간기업 운영에도 이러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Alonso 공공윤리비서관은 2008년 국제경제위기 이후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공기업 부패 방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금년 G20 의장국으로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기업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언급함.
- Chabert 다자업무 비서관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바, 공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논의를 통하여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까지도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Bonucci OECD 법무과장은 금번 행사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요소와 그로 인한 영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OECD는 공기업 부패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G20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함.

- 7 -

□ 패널토론1 : 공기업의 부패 유발 요소

- OECD에서 수집한 자료와 실제 국영기업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부패 유발 요소를 파악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함.
- Hans Christiansen OECD 국영 민영 실무그룹 사무국장은 공기업의 1/3만이 기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내부고발 제도 및 감사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기업이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함. 또한 감사 및 준법 경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보수가 민간기업 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들.
- Joao Adalberto Elec Jr Petrobras(브라질의 국영 에너지 기업) 거버넌스 리스크 준법관리 담당자는 기업에서 상급자가 내리는 지시는 단순한 지시를 넘어 법으로 작용하는바, 이러한 문화에서 내부고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움을 지적함. 또한 정부에서 기업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 또는 정부측 이권에 대한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업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운영진에 대한 청렴여부 배경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Santiago Dondo EITI(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남미지역소장은 EITI에 현재 52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의무적으로 일일 거래량과 금액을 공시하게 하는 등 오일, 가스, 미네랄 등 채굴 산업 분야에 있어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EITI 규정을 소개함.

□ 패널토론2 : 주요 공기업 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

-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분석하며 특히 공기업 부패의 특징에 대하여 토론함. 또한 대중교통과 천연자원을 다루는 공기업이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경험한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경영 철학과 시사점을 공유함.

- 8 -

- Renaud Jaune 프랑스 부패방지국 사무관은 공기업이 대부분 △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 정치권과 연계성이 높으며, △ 공공조달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 내부 컨트롤 매커니즘이 탄탄하지 못하며, △ 법적인 제재장치 없이 관리자의 양심적 운영에 의지하고 △ ISO 37001등의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취약점을 공기업 부패 위험요소로 언급함.
- Patricio Veliz Moeller 산티아고 지하철공단 이사와 SNAM S.p.A. (이탈리아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업체) 대표 대리는 실제 공기업 운영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즈니스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투명성과 윤리경영이 핵심 요소로 귀결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특히 부패방지 규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패널토론3 : 공기업 부패유발 요소 찾기 및 청렴도 증진 예시

-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공기업 운영 사례에서 청렴도 증진을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 및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공기업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실 경영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견해를 나눔.
- Paula Ninchi ARSAT(아르헨티나 국영 위성 통신기업) 대표는 회사 자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포털을 제작하고 분리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는 등 공기업 투명성 향상을 위해 개발 및 시행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함.
- Julian Bernal Iturriaga GACM 투명성 자문관은 2020년 완공예정인 멕시코시 신공항 건설을 위해 100%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GACM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Emilio Pineda 미주개발은행 대표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운영 수익은 기업 운영으로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운영 방만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공기업 운영할 원동력이 없다는 점을 악순환의 원인으로 언급함.

- 9 -

- 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은 TI가 공공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해 규정한 10가지 원칙을 소개하면서 G20이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함. 또한 부패인식지수가 아닌 실제 부패 발생 지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부패 사건은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를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우나 공공분야 부패 체감지수 또는 인식지수가 더 적절하다고 답변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GBC(Global Barometer of Corruption) 등의 지수를 함께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 패널토론4 :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올바른 기업 경영(Good Governance) 이니셔티브

- OECD 기업 경영 가이드라인 준수 권장에서부터 최근 도입된 기업책임법안 통과를 위한 과정까지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올바른 기업 경영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소개함.
- Sebastian Lopez Azumendi 아르헨티나 정책조정비서관실 자문관은 OECD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공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보고를 통하여 거버넌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등 기업 스스로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
- Rocio Balestra 아르헨티나 증권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차원적인 경영 기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서 이를 통하여 국내 기업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함. 올바른 기업 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러한 사회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함.

- Mora Kantor 아르헨티나 부패방지사무소 청렴도 투명성 국장은 공기업 부패가 가져오는 사회적 과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특화된 부패방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함. 현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기업책임법(corporate liability bill)을 도입하였고, 공기업 청렴 네트워크(Integrity at SOEs Network) 등을 통하여 수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소개함.
- Alberto Gowland 아르헨티나 감사원장은 아르헨티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과거에 비하여 큰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설 기관에 의한 감사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을 설명함.

□ 패널토론5 : 공기업 청렴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접근방법 - 소유자, 규제자, 감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 중국, 영국, 터키, 한국의 공기업 운영 경험을 통하여 공기업 청렴도 향상 노하우 및 정책 성공사례, 시사점 등을 공유하며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
- Yifan La 중국 감찰부 국제협력국장은 과거 7-80년대에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국영이었으나 지금은 큰 부분이 민영화되었다고 하면서 중국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부패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소개함. 또한 월드뱅크 및 선진국과의 양자 협력을 통하여 제3자 모니터링, 내부 감사 체제 등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는 등 친족주의를 비롯한 악습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언급함.
- Lucie Lambert 영국 투자청 대표는 영국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기업경영강령을 소개하며 민간기업 운영의 성공사례를 공기업 운영에도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부패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는 등 소유주로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업 운영 전략이 영향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11 -

- Mehmet Kaya 터키 재무성 공기업국장은 조달분야 등의 공기업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바, 관련법을 강화하고 독립적 감사기구를 조직하는 등 생산자-공급자-소비자 간의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업 운영에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간섭하는 것을 제제함으로써 공기업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은 한국 정부가 청렴도 측정 제도를 통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청렴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을 소개함. 이론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 수단으로서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 효과 또한 객관적인 수치화 자료로 제시함.

2. 반부패실무그룹회의(2.28-3.1)

□ 개회

- Laura Alonso 아르헨티나 부패방지국 공공윤리비서관과 Guillaume Chabert 프랑스 공공재무회계부 다자업무 비서관이 공동 의장으로서 환영인사를 하였음. 금년도에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G20 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공기업 청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2.28-3.1간 이틀에 걸쳐 논의될 의제를 소개함.

□ 세션1 : 이해충돌

- (OECD와 월드뱅크 발표 - 공공분야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G20 고위급 원칙 컨셉노트 소개) 올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주도로 이해충돌 관리가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 OECD 이해충돌 기준을 보완하는 ‘공공분야 이해충돌 방지 및

- 관리를 위한 G20 고위급 원칙'과 △ 구체적 이해충돌 사례별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분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 가이드'를 제작할 계획임을 소개함.
-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 이해충돌 무관용 문화를 확산시키며 △ 효율적 이행 방안 등 3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I)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과 시스템 개발 :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설정, 이해충돌관리의 명확한 대상 선정, 이해충돌 관리에 대한 위험도 측면의 접근
 - II) 이해충돌 무관용 문화 확산 : 개방적 조직 문화, 이해충돌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인지도 향상과 역량 강화,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 III) 효율적 이행 방안 : 정보공개, 투명성 및 검증,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집행
 - 고위급 원칙은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현대 이해충돌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실질적 이행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컨셉노트에 대한 회원국들의 피드백을 요청함.
 - (의장) 3월 21일까지 컨셉노트에 대한 코멘트를 받고 6월 회의 1주일 전까지 초안을 회람하도록 고위급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아르헨티나) 이해충돌 방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며, 정보공개 등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프랑스) G20 고위급 원칙은 비회원국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수

- 13 -

- 있는바 동 원칙을 적극 지지함.
- (멕시코) 멕시코 정부도 재산 공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중이라고 소개함.
 - (EU) 최근 EU 위원 행동강령에는 각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EU 펀드 대출(loans)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었음을 공유함.
 - (UNODC) 유엔회원국의 이해충돌 방지사례를 수집하여 향후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러시아) 러시아 정부도 작년에만 천여 건의 이해충돌 사건을 기소하는 등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표명함.
 - (칠레) 효율적 이해충돌 관리를 위하여 투명성, 책임성, 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최근 칠레 정부는 로비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음을 소개함.
 - (이탈리아) 이탈리아에는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공직자 행동 강령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을 언급함.
 - (사우디아라비아) 이해충돌관리 문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의 기본 내용에 합치되는바, 동 논의를 환영하며 제시된 컨셉노트를 지지함.
 - (네덜란드) 컨셉노트에 제시된 3가지 주요 요소에 동의하며 특히 8번 항목인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브라질) 2013년부터 브라질 정부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소개함.
 - (스위스) 최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채용 등에 관련된 이해충돌을 특히 방지할 수 있는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 14 -

- (중국) 중국정부는 정부기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공무원의 겸직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관여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소개함.
- (미국, 영국) 이해충돌 방지 컨셉 노트와 고위급 원칙 마련에 대한 의제가 선정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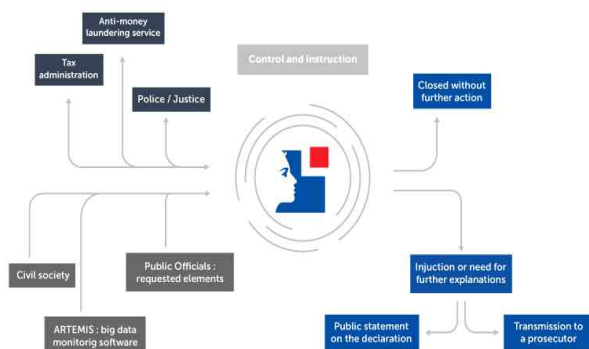
□ 세션1.1 : 이해충돌관리 사례 소개

- (아르헨티나) 부패방지사무소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며, 이를 △ 자산공개 분석, 공직자 문의에 대한 시의적절한 답변 제공, 선물 등록 등 예방하는 단계, △ 언론이나 민간 영역에서의 신고 접수 등 인지하는 단계, △ 이해충돌로 인해 발생한 계약 무효화 및 처벌 등 사후 조치 단계 등 3가지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음.
-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공직자가 정부 기관의 영향력을 민간 영역에 행사하고, △ 근무중인 정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납품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동 법으로 인하여 11,260건의 조달분야 법인 이해충돌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부패방지사무소는 이해충돌 상황 시뮬레이션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프랑스 HATVP) 2013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후 4년간의 성과를 소개함. 공직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이해충돌 상황으로 정의하고, △ 공무 수행 방해 요소 및 정도를 측정하는 정의 단계, △ 이해관계 공개, 조사 및 신고 등의 인지 단계, △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카운셀링 및 처벌을 다루는 행동 단계, △ 정보공개 및 사적 이해관계 기피 등의 예방 단계 등 4가지로 나누어 관리함.

- 15 -

- 프랑스 HATVP는 고위급 공무원의 활동 내역을 스크리닝하고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중에 있는바, 이 프로그램에서 경고등이 울리게 되면 당사자와 충분한 카운슬링을 통하여 상황을 이해시키고 injunction power(법원명령, 가처분 등)를 활용하기도 함.
- 이 프로그램은 정부 고위급 공무원 40명, 지방 선출직 500명, 독립기관 관리자 600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2014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약 40건의 케이스가 발생함.

[운영 매커니즘]



HATVP는 2016년부터 세금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고위공직자의 예금정보, 토지재산 정보를 비롯한 제반 재산 정보를 직접 수령함. 또한 국립 자금세탁방지 기구(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ervice)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외 자산 확인 등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상기 과정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음.

※ 심층 검증을 위한 5가지 모티브

- 1. 구체적 내역 공개
- 2. 공식적인 검증을 위한 정보 공개 중 불충분한 정보, 지연, 오류 발생 방지
- 3. 빨간불 시스템(시민사회, 일반 시민, 다른 정부기관 등)
- 4. 랜덤 체크,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성된 카테고리별 크로스 체크
- 5. 임기 중 발생한 부정재산 적발
 - (캐나다)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NGO 등 비영리 법인 운영과 관련되었을 때도 해당됨.
 -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고위급일수록 재정현황 등 보고해야 할 정보가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게 되며,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됨.
 - OECD는 프랑스 HATVP에 행동단계에서 카운슬링(대화)와 법원 명령이 상호 모순적이지 않은가에 대하여 문의한바, HATVP는 두 가지 수단이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카운슬링(대화) 단계에서 가능한 법적 처벌을 인지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 세션2 : 해외 뇌물

- (OECD) ‘17년 체코 3주기, 호주 4주기 점검이 진행되었으며, 금년에 독일, 멕시코, 한국, 일본에 대한 4주기 점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며 뇌물방지협약 이행 관련 활동 진행상황을 소개함.
 - 뇌물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기초적인 단계를 측정하는 1, 2 주기 점검을 대다수의 G20 회원국들이 완료한 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점검하는 3, 4 단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중임.
- 17 -
- OECD 뇌물방지협약은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화된 협약 이행이 요구됨. 국가 간 뇌물은 국내적 공공기관 운영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작년에 중국, 인도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과 같이 올해 G20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와 결과가 도출되기 기대함.
 - (아르헨티나) 2017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기업책임법(Corporate Liability Bill)에 대하여 소개함.
 - 기업 운영시 국내외 기관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관여하여 혜택을 받는 등의 행위 시에 해당 법인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으로서, 법인 자본 출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여부와 민간 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18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 기업책임법은 국내 또는 국가간 뇌물 및 영향력 행사, 공직자의 불법 거래, 공직자의 불법 징수, 공직자의 부정축재, 회계장부 조작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는 수혜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 상업 활동 제한, 공공사업 입찰 제한, 정부 보조금 박탈 등이 있음.
 - 다만 △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 상황 발생 사전에 적법한 통제와 관리를 시행한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환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 최저 하한선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거나, △ 수익이나 상황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 기소되어 자산을 압류 당했을 경우에 협의에 의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인도) 인도 정부도 해외뇌물방지, 이해충돌 등에 해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중이라고 언급함.

- (중국) 중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보다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뇌물 금지 조항이 자국법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음.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많이 적용되며, 최근 진행중인 중국-라오스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과 라오스 회사들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함. 중국은 월드뱅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 대기업에 대한 준법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중임.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캐나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영국) 영국은 프랑스, 미국, OECD의 지원을 바탕으로 뇌물방지 의정서 T/F 팀을 운영중이며, 국제적 뇌물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칠레) 칠레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며, 아르헨티나가 기업책임법 도입 전 법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질문함.
- (아르헨티나) 각계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불법 행위를 규정과 처벌 등 법령의 모든 내용을 다룸.
- (일본) 일본은 OECD 뇌물방지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G20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하며, G20 회원국이 모두 협약 당사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자체적인 뇌물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작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OECD) OECD 뇌물방지 협약이 실제 뇌물 사례를 다루는 유일한 협약이고, 대부분의 G20 회원국이 뇌물 공여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모든 G20 회원국이 협약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9 -

- (미국, 프랑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의 기업책임법 도입을 환영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이 각 국가별로 성과를 내고 있음을 평가함.

□ 세션3 : 실소유자

- (영국 발표 - 2016년부터 시행중인 PSC(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 기업의 주요 책임자 등록제도) 탈세, 자금세탁 등 기업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를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중임.
- 영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은 모두 주요 책임자(실질적 소유자)를 등록할 의무를 가지며,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 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주요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갱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최대 2년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법상의 책임은 해당 기업, 관리자 등 운영 주체에 주어질 수 있음.
- 동 법을 시행함으로써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 (캐나다) 영국의 PSC 등록제도 시행을 환영하며 캐나다도 실소유자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미국) G20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도 기업의 자금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온바, 영국의 PSC 등록제도는 그간의 반부패 논의가 가져온 결실로 높이 평가함.

- (FATF) 영국의 실소유자 등록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직면한 과제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처럼 실소유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만이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FATF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네덜란드) 영국의 실소유자 등록제도가 테러자금 조달,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 (프랑스) 기업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고위급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업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세션4 : 야생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

- (UNODC, 프랑스)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가별 정책에 대한 질문지 초안을 회람하고 '18.3.30까지 의견*'을 접수하기로 함.
 - 작년까지 중점적으로 다뤄온 동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역량 강화 및 제재 시행 매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국가간 협력을 촉구함.
 - * 환경부(생물다양성과)에 3.29까지 의견 요청('18.3.9)
- (영국) 동 주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국에서 '18.10월중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림.

□ 세션5 : 반부패실무그룹 운영방안 논의

- (의장) '17년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비엔나) 회의시 제기된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무국은 회의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3개의 개선방안을 소개한 바 있음.
- (옵션1) 2년단위 행동계획과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방식임. 다만 '19년부터는 우선과제 개수를 줄이고 의견 교환은 주로 서면으로 운영함.

- 21 -

- (옵션2) 행동계획을 3년 또는 4년 주기로 늘려서 운영함. G20 의장국이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간 작업계획(work program)으로 매년마다 보완됨. 세르파 회의에서 차년도 작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18.10월 새로운 행동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옵션3) 영구적인 Terms of Reference(과업지시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반부패 실무그룹 회원국의 장기 책임이 추가된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현 행동계획 체제를 파기하는 방식임. 옵션2와 마찬가지로 G20 의장국이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간 작업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장기 체제(Framework)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다만 옵션3은 반부패실무그룹 운영의 기반이 되는 St. Petersburg Framework를 개편하는 것으로, 업무 방식은 물론 업무 영역에 대한 개편이 대대적으로 따를 수 있음.
- (호주) 옵션2를 지지하며, 워킹 플랜을 통하여 단기 중기 단기적 이행계획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옵션1을 지지하며, 워킹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2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 보다 3-4년 주기로 운영하도록 함.
- (캐나다)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4-5년 주기의 계획을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탈리아) 그룹의 이해 균형을 유지하는것이 필요함. 옵션2가 가장 적절해보이며 4-5년 주기의 이행계획은 의장국 차원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현행 행동계획을 유지하나 3년 주기로 갱신하고 다른 언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 옵션 3를 지지함. 시간을 절약하여 각 이슈별 이해도를 높이는데 할애할 수 있음. 차기 옵션으로 옵션2를 지지하며 4년 주기를 희망함.

- 22 -

- (인도네시아) 행동계획을 장기로 운영해야 하며 이행 플랜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옵션2를 지지함. 3년 주기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함.
- (아르헨티나) 첫 번째 실무그룹회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2회가 남았는데 이미 논의할 내용이 가득함. 실무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동계획을 다자원칙에 의해 작성하여 이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옵션2을 지지하며 기간은 3년을 선호함.
- (브라질) 어느 옵션에도 따를 용의가 있으나 옵션2를 지지함. 불필요한 논의 시간을 절약하여 토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음. 행동계획의 주기를 미리 정하는 것 보다 행동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따라 실질적 이행 가능 여부 및 기간을 측정한 후 그에 맞는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영국) 워킹그룹의 목적에 다시 집중해야 하며 브라질이 언급한 것처럼 의제별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옵션2를 지지하며 3년 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러시아) 지금 시점에서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옵션1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함. 옵션3 또한 극단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외부의 시각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옵션2가 가장 적절해 보임. 3-4년 주기의 액션플랜을 운영하며 현 운영방식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EU) 옵션 2와 3중 옵션3을 선호함.
- (미국) 행동계획을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으나 이를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다른 문제임. 장기간 운영시 적시에 개선이 어려우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움. 옵션2가 가장 적절해보이며 4년 주기를 희망함.

- 23 -

- (터키) 옵션3를 지지함.
- (일본) 일본은 새로운 실무그룹 운영방안을 도입하는 첫 의장국이 될 것임. 옵션2를 지지하며, 행동계획을 구상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이행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행동계획을 4년-5년으로 장기로 운영할 것을 희망함.
- (남아프리카) 옵션2를 지지하며 4년 기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함.
- (멕시코)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바, 옵션2를 지지함.
- (인도) 옵션2를 지지하며, 이 방안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중국) 옵션2를 지지함. 행동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 할 것을 희망함.
- (사우디아라비아) 옵션2을 지지하며 4년 주기로 시행 할 것을 희망함.
- (한국) 옵션2를 지지하며, 행동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 할 것을 희망함.
- (독일, 캐나다, 영국) 워킹그룹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함. 특정 이슈에 대한 외압 등 실무그룹에서 논의되는 의제선정 등에 대한 투명성 유지를 위한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의장) 투명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 의장국 승계시 투명하게 아젠다 등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가하겠음.
- 또한 옵션2에 대한 선택지로 대다수가 의견을 낸바, 3년 주기 행동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운영방안 초안을 의장국과 협의하여 작성 후 회람하도록 하겠음.

- 24 -

□ 세션6 : 공기업 청렴

- (의장국 -공기업 청렴에 대한 고위급 원칙 초안 논의) 초안을 사전에 회람하였으며 다음 6월 회의이전에 2차례 더 의견 수집 기회를 가지고자 함.
- (OECD) OECD는 공기업의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9년 1사분기 내 발표 예정임. 특히 오일·가스 등의 자원을 다루는 공기업의 경우, 국제조달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 소유 및 거버넌스, 부패방지 및 발견시 조치와 대응에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음.
- (독일) G20 실무그룹의 공기업 관련 고위급 원칙이 단순히 OECD 가이드라인의 복사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을 요청함. 두 원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 (영국) 자국에서 특히 공기업과 관련된 대규모 부패사건이 다수 발생 한바, 동 주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음. 특히 자원 유출에 대한 사하라 이남지역의 상황을 환기하고, 이 지역 내 commodity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안함.
- (중국) 고위급 원칙에 “no one-size fits all” 정책에 대한 언급과 국별 특수성에 대한 참고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특히 공기업 부패 방지 부분에 있어 공기업 관리층이 해외로 도주하여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banking security laws”를 넘어서는 국가간 협력이 포함되어야 함.
- (브라질) 현재 공기업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의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정치적 외압 등 공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함.

- 25 -

- (한국)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업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바, 동 의제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공감함. 한국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 중임.
 -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서 언급된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장려 정책 국별 질문지 초안에 대한 회원국 회람을 재차 요청함. 2017-18 행동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바, 금년내 자료집을 발간 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대한 확정과 답변요청이 적어도 4월까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함.
- (이탈리아, 칠레) 고위급 원칙에 대한 논의는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함. 특히 소유주와 이윤 수혜자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회색지역(grey area)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세션7 : 정보 공개

- (아르헨티나, 멕시코) 자국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계약정보 기준 공개 등에 대한 운영 내용을 소개함.
 - 멕시코는 2016년부터 투명성, 책무성 강화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로써 ‘계약정보 공개 기준 및 인프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체계를 통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정보 공개 기준을 수립하는데 영국, 콜롬비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세션8 : 인프라와 부패방지

- 26 -

- (인프라 부패방지 이니셔티브 실무그룹 발표) 실무그룹과 가스·오일 등 채굴산업 및 국제조달시장과 깊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두 실무그룹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부패 의제가 G20 내에서 주류화(mainstream) 될 수 있도록 실무그룹 회의시, 성과 발표 및 이행상황 점검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함.

□ 세션9 : 투자이민과 부패 연구 프로젝트

- (중국) 투자이민과 부패 연구로 지난 2017년 3차 실무그룹 회의 시 질문지 회람을 통해 자료집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FATF의 2010년 투자이민 조세법 준수 프로그램 기본 원칙을 참고로 하였음.

□ 세션10 : UN반부패협약

- (UNODC) 지난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업데이트 및 평가 체계에 대해 발표함.
- ‘17.11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비엔나)는 ①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을 위한 사법공조 강화, ②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에 기초한 대규모 부패 등 모든 형태의 부패 예방 및 척결, ③ 유엔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촉진, ④ 반부패 분야 점검 메커니즘 관련 국제기구 간 시너지 제고, ⑤ 부패예방 조치 장려, ⑥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 조치, ⑦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강화, ⑧ 스포츠 분야 부패 등 총 8개의 결의문을 채택함.
- 1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95개국을 대상으로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점검체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관련 법 제개정(86%), 국내 부패방지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74%), 반부패 전담 조직 및 협의회 등 설치(60%), 국제협력 강화(58%) 등의 성과 도출

- 27 -

- (1주기 이행점검 결과) 사무국은 협약 제3장 및 제4장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비구속적 권고사항(non-binding recommendations)”을 이번 회기 중 논의를 거쳐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의 구분 명확화 등 당사국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차기 이행점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주기 이행점검 결과) 2주기 이행점검 동향을 분석한 결과, 44개 권고사항과 15개 우수 사례가 도출되었으며, 모든 국가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직자의 임용·승진·퇴직 관련 시스템 강화(제7조(1)) 및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로부터의 자산 회복(제52조) 문제 해결이 권고됨.

□ 세션12 : 자산회복

- (미국, 영국 - 자산회복 글로벌 포럼(GFAR) 결과 소개) ‘16.5월 런던 반부패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미국과 영국 정부는 StAR(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의 지원으로 ‘자산회복에 대한 글로벌 포럼’을 미국 워싱턴 DC(‘17.12.4-6)에서 개최함.
- 동 회의에서 자산회복 국제·국내 협력 방안, 도난 자산 추적(혁신 기술과 언론, 시민사회 활용), 자산회복을 위한 법적 틀 활용 방안, StAR의 지난 10년간 활동성과 등이 공유됨.
- (World Bank, UNODC - ‘17.11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비엔나) 결과 공유) 각국 대표들은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관련 법 제개정, 자산회복 전담기구 설치, 자산회복 요청 절차에 대한 안내서 개발, 비형사 몰수제도 도입 등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자산의 식별·추적·동결·몰수·쌍방가벌성·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28 -

붙임 1

회의 일정

2.27(화) : 부대행사(주제 : 공기업 부패척결과 청렴 제고)	
09:00~10:00	등록
10:00~10:30	개회 • 환영사 : Laura Alonso, Guillaume Chabert G20 공동의장 Gabriela Ramos, G20 세르파 Marcos Pena,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10:30~10:45	커피 브레이크
10:45~12:15	패널토론 1. 공기업의 부패 유발 요소 • Hans Christiansen, Head of the OECD Secretariat to the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 • Joao Adalberto Elek Jr., Executive Director of 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 of Petrobras • Santiago Dondo, Regional Director for LAC, EITI • 진행자 : Emilie Cazenave, International partnerships coordinator, HATVP
12:15~13:45	점심
13:45~15:00	패널토론 2. 주요 공기업 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 • Marco Reggiani, General Counsel, SNAM S.p.A., Italy • Patricio Veliz Moeller, Secretar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mpliance Officer of Metro de Santiago • Renaud Jaune, Deputy Director of Council, Strategic Analysis and Intl' Affairs of the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 진행자 : George Mandelbaum, Chair of B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15:00~15:15	커피 브레이크
15:15~17:00	패널토론 3. 공기업 부패유발 요소 찾기 및 청렴도 증진 예시 • 아르헨티나 공기업 ARSAT 대표 • Julian Bernal Iturriaga, Advisor on transparency of Grupo Aeroportuario de la Ciudad de Mexico (GACM) • Emilio Pined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 진행자 : Emilie Cazenave, International partnerships coordinator, HATVP

2.28(수) : 부대행사(계속)	
09:30~09:35	개회 • 인사말 : Nicola Bonnuci, OECD Director for Legal Affair and OECD representative to the G20 ACWG
09:35~10:20	패널토론 4.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굿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 Sebastian Lopez Azumendi, Adviser of the Chief of Cabinet Office • Mora Kantor, Undersecretary of Integrity and Transparency of the Anti-corruption Office • Rocio Balestra, Head of the 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 Alberto Gowland, Auditor General,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Argentina • 진행자 : Nicola Bonucci, OECD
10:20~10:35	커피 브레이크
10:35~12:00	패널토론 5. 공기업 청렴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접근 방법 - 소유자, 규제자, 감시자로서 국가의 역할 <i>공기업의 직접적·공식적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가 기업 운영에 수시로 개입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부패위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공기업 청렴도 향상과 부패 척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i> • Yifan La, Director General, Intn' cooperation Department,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nd Ministry of Supervision, China • Cucie Lambert, UK Government Investment (UKGI) • Mehmet Kaya, Acting DG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SOEs, 터키 재무성 차관실 •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 진행자 : Mauricio Roitman, President of ENERGAS
12:00~12:15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측정을 위한 미래 가이드라인 • Laura Alonso, Guillaume Chabert G20 공동의장

2.28(수) :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13:30~14:30	대표단 등록
14:30~15:00	개회식 • 환영사 : Laura Alonso, 아르헨티나 부패방지국 • 환영사 : Guillaume Chabert, 프랑스 재무성 차관 • 회의 일정 및 행정업무 소개 : 공동의장
15:00~15:40	Session 1. 이해충돌 • OECD, World Bank 발표 • 이해충돌관리 고위급 원칙(High Level Principles on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컨셉노트 논의
15:4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6:40	Session 1.1. 이해충돌 관리 사례 소개 • 아르헨티나, 프랑스, 캐나다 발표
16:40~17:10	Session 2. 해의 너물 • OECD의 해의 너물 동향 소개 •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기업책임법(Corporate Liability Bill) 발표
17:10~17:30	Session 3. 실소유자 • 영국의 PSC(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 기업의 주요 책임자) 등록 제도 발표
17:30~17:45	Session 4. 야생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 • 야생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에 대한 고위급 원칙 이행 관련 질문지에 대한 프랑스와 UNODC의 발표
17:45~18:00	마무리

3.1(목) :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계속)	
09:00~09:15	기념 촬영
09:15~11:15	Session 5. 반부패 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 • 지난 비엔나 회의시 제기된 방법론에 대한 논의(계속)
11:15~11:30	커피 브레이크
11:30~12:10	Session 6. 공기업 청렴 • 공기업 청렴에 대한 고위급 원칙 초안 논의
12:10~12:40	Session 7. 정보 공개 • 멕시코의 계약정보 기준 공개 및 인프라 • 아르헨티나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12:40~12:55	Session 8. 인프라와 부패방지 • 인프라 부패방지 이니셔티브 실무그룹 발표
12:55~14:15	점심
14:15~14:30	Session 9. 투자이민과 부패 연구 프로젝트 • 투자 이민과 부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초안 발표
14:30~15:00	Session 10. UN 반부패협약 • 지난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내용 업데이트 및 평가 매커니즘 이행 • 지난 당사국 총회시 발표한 결의안에 대한 국가별 간략 소개 (이탈리아, 미국, 아르헨티나-프랑스)
15:00~15:30	Session 11. 국제기구 • “부패 : 비용, 완화, IMF의 향후 역할”에 대한 IMF 발표 • FATE(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반부패 측정 내용 업데이트
15:30~16:00	Session 12. 자산회복 • 미국과 영국의 자산회복 글로벌 포럼(GFAR) 내용 업데이트 • World Bank와 UNODC의 자산회복 이니셔티브 내용 업데이트
16:00~16:20	커피 브레이크
16:20~16:35	Session 13. 부패 측정 • 이탈리아의 부패측정 위크샵 결과 발표
16:35~17:35	Session 14.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 2018 반부패 논의 동향에 대한 B20과 C20 대표의 발표
17:35~18:00	Session 15. 실무회의 운영방안 결론 도출
18:00~18:15	폐회 • 회의 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공동의장 마무리 발언

Enhancing Integrity Level of Korea's Public Enterprises through Integrity Assessment and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 I . Background
- II . Main Contents
- III . Effectiveness
- IV . Future directions

- 33 -

I . Background

“ Health is better than wealth ”



I . Background



- 34 -

II. Main Contents

Integrity Assessment

- ✓ Objective and scientific assessment of public sector integrity
- ✓ Systemic diagnosis of corruption causing factors



II. Major Contents

Integrity Assessment

1. Organization- based systemic corruption diagnosis

- ✓ Assess corruption level in works of public institutions provided for the public and organizations

2. Public service users who experienced works of public agency

- ✓ '17 IA assessed 702 public organizations: survey respondents were 159,000 public service users, 79,000 public agency employees and 37,000 policy customers

3. Actual corruption cases are reflected in the IA scores

- ✓ Corruption experience and perception are assessed through surveys
- ✓ Scores of corruption occurrence reflecting seriousness, frequency and prevalence are applied to IA scores

- 35 -

II. Major Contents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 ✓ Assess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initiatives of public institution and anti-corruption efforts



II. Major Contents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1. Provides a clear guidance to public agencies in implementing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 ✓ Assessment indicators contains concrete guidance for integrity activity of one year

2. Conducted with a consistent timeline

- ✓ (Mar) finalize assessment indicators and hold workshop → (Jan) receive target organization's self performance report → (Nov~ Dec) conduct AIA and analyze the assessment results → (Jan) announce assessment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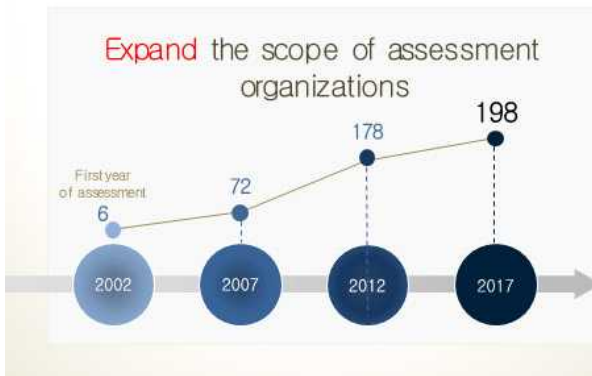
3. Utilize public pressure and benefits of incentives

- ✓ (Low scoring institutions) strengthen anti-corruption efforts prompted by criticism from the public and the National Assembly
(High scoring institutions) enhance reputation by disclosing AIA scores in press release/ Awarded prize and overseas training opportunity

4. Spread best anti-corruption initiative to entire public sector

- 36 -

III. Effectiveness



III. Effectiveness



- 37 -

III. Effec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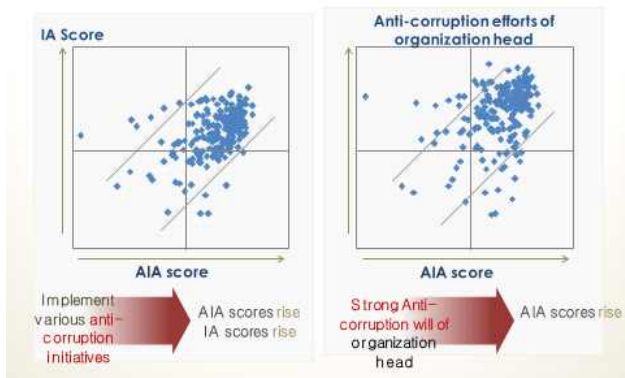


III. Effec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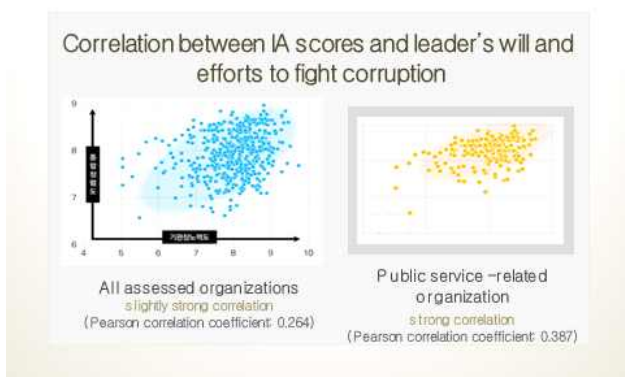


- 38 -

III. Effectiveness



III. Effectiveness



- 39 -

III. Effectiveness

Anti-corruption Initiative Contest

Spread effective anti-corruption initiatives

Promote interests of the public and public organizations to integrity activities

- ☒ Relevance to corruption-prone areas
- ☒ Whether the initiative is institutionalized
- ☒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in reducing corruption
- ☒ Possibility of being used in other institutions

IV. Future Directions

- Expand assessment and evaluation to corruption prone organizations
- Sophisticate IA assessment model
- Improve AIA assessment tasks
- Strengthen anti-corruption technical assistance by disseminating best initiatives
- Disclose assessment results to secure anti-corruption drive

- 40 -

□ 운영방안 3가지 옵션

Options note on the working methods of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In line with the work undertaken by the previous German and Brazilian co-chairmanship in 2017, the discussion paper prepared on behalf of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future of the Group as well as the ACWG Work Program for 2018, the following note proposes to discuss three possible options on ways to optimize its working methods. Indeed, Action Plans have demonstrated to play a useful role in outlining priority work streams. However, considering what has been highlighted during the 3rd ACWG meeting in Vienna 2017, the drafting and negotiation of biennial Implementation Plans has proved to be a time-consuming exercise that diverts time and resources from the Group that could be better allocated towards working on substance and operational work. Therefore, new methods of work planning could be proposed with two key objectives in mind:

- i)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Group, by spending less time in negotiating working documents and devoting more time to operational work;
- ii) Find a compromise to tackle efficiently short, medium, and longer-term objectives and respect the balance between remaining priorities and those to be implemented by the ongoing Presidency

Three, *mutually exclusive* options are presented, depending on the timeframe that the delegations want to retain for the work planning. In order to be able to dedicate itself to shaping a new working model throughout the year, the Group should decide on which path to follow at the end of the first meeting, in 1 March 2018.

Option 1: maintaining the status-quo

- Maintain the current model, based on the adoption of a biennial Action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but seek to identify ways to simplify the negotiation process

Pros

- Limited changes to current working methods

Cons

- Two documents still have to be negotiated on a biennial basis
- The agility of ACWG to program its work remains limited

Implementation

If the status quo option is retained, the group should nonetheless work on simplify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se two tools. Possible options include:

- 1) agreeing on a smaller set of priorities from 2019 and beyond;
- 2) dedicate less time in meetings to negotiate these documents and rely more on written procedure

Option 2: increasing the duration of the Action Plan and having a one-year agile work schedule

- Keep the methodology of the successive Action Plans, to be approved by Sherpas, but drop the Implementation Plan and adopt a longer period for the Action Plan (3 or 4 years for example).
- Action Plans would be complemented each year by a yearly “work program” reflecting both the yearly priorities of the Presidency and the work to carry out under the Action Plan for the year to come.
- The “work program” would be developed by the upcoming co-chairs, soliciting ideas from other ACWG members, and to be adopted at the first Group meeting.

Pros

- The annual work program proposed by the Presidency allows for agility and flexibility for the Group's work
- Changes to the current working method remain limited

Cons

- An Action Plan still has to be negotiated every 3 or 4 years

Implementation

The Group should start working on a new draft Action Plan in June 2018 with the objective of finalizing this new Action Plan in October 2018.

Option 3: creating “permanent” Terms of Reference

- Replacing the methodology of the Action Plan, and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Plan, with new “permanent” Terms of Reference (to be reviewed for instance every 5 years or when needed) complemented with long-term commitments agreed upon by ACWG countries and approved by Sherpas. This document will be developed building upon the St. Petersburg Strategic Framework.

- This stable framework would be complemented each year by a yearly “work program” reflecting the priorities of the Presidency. The “work program” would be developed by the upcoming co-chairs, soliciting ideas from other ACWG members, and to be adopted at the first Group meeting.

Pros

- The annual work program proposed by the Presidency allows for agility and flexibility for the Group's work
- The elimination of the Action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saves time for the ACWG that can be dedicated to more work on substance

Cons

- This option is the one having the most impact on the Group's current practice

Implementation

The “permanent” Terms of Reference will be developed building upon the St. Petersburg Strategic Framework reflecting both the changes of working methods and, if necessary, the new areas of work that the Group may want to tackle in the long term. An update of this St. Petersburg Framework could be discussed in June 2018 with the idea of finalizing it in October 2018.

□ 요약

- (옵션1) 2년 주기 행동계획 체제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을 개발
- (옵션2) 현 행동계획을 유지하되 이행계획을 파기하고, 3년 이상 장기간 주기의 행동계획 체제를 새롭게 도입
 - 장기 행동계획은 G20 의장국이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간 work program으로 매년마다 보완됨. 세르파 회의에서 차년도 work program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옵션3) 새로운 영구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매 5년마다 점검)을 바탕으로 반부패 실무그룹 회원국의 장기 책임이 추가된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현 행동계획 체제를 파기
 - 이 체제는 G20 의장국이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간 work program으로 매년마다 보완됨. 세르파 회의에서 차년도 work program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Concept note on developing the G20 High-Level Principl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Conflict of interest, in which a public official's private interests ma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have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world-wide. Whilst the majority of G20 countries have developed laws, policies and guidance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risks remain, in particular, linked to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gaps. These gaps can be found, for instance, with regards to pre- and post- public employment provision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ystems for declaration of interests, assets, income and liabilities.

The 2017-2018 Implementation Plan of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includes specific focus on risk areas under "Public Sector Integrity and Transparency". Argentina set conflict of interest as a priority issue for the 2018 G20 Presidency with the aim to share experiences on how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ffecting public officials,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of asset and income disclosure systems. The Argentine G20 Presidency tabled an innovative agenda aiming for pragmatic outputs, and has been working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developing the following two products:

- *High-Level Principl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These will aim to build upon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ose from the OECD. They would be oriented to identify a set of key concrete actions that governments could commit to undertake in accordance to their needs and country context.
- *Good Practices Guide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The main purpose of these will be to provide recommendations on how to deal with specific conflict-of-interest cases

This concept note, prepared by the OECD and the World Bank, builds on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tandards such as those from the OECD, WB, United Nations, Council of Europ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frican Union, APEC as well as previous G20 High-Level Principles in the related areas and knowledge work such as that produced by the World Bank and the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The full list of selected references can be found at the end of the document. For convenience, relevant article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ndards and knowledge products) are listed after each principle.

The concept note aims at identifying a set of key concrete actions that governments could commit to undertake in accordance to their needs and country context. Based on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good practice, this concept note provides a context-driven, risk-based approach, and is structured on three pillars: 1) developing standards and a system to prevent and manage conflict of interest, 2) fostering a culture of integrity which is intolerant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3) enabling effective accountability.

	Standard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1. G20 countries should set clear and high standard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ensures public officials' understanding and commitment to serving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emoval, or restricting of any improper influence of private interests that could compromise official decis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 UNCAC Art 7.4 ▶ OECD Recommendation 1 -5, ▶ WB, standards for high ranking/politically appointed officials ▶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Art 13 ▶ Council of Europe Toolkit Art 18-24, standards for at-risk officials ▶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 3.1 2. G20 countries should develop specific, coherent and operational standards of conduct for Ministers, senior public official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in at-risk areas, reflecting the specific nature of these positions, higher exposure to conflict of interest risks and public expectation.
	Designated body or bodies 3. G20 countries should assign clear responsibilities to a designated body or bodies for developing, implementing and updating the conflict-of-interest policies in public sector organis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ir relevance, the designated body should, for example regularly review the level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evant policies and practices based on evidence in the form of objective data, benchmarks and indicators as well as the views of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 WB, designated body ▶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 3.9 ▶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rt 7.2
	Risk-based approach to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4.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 risks of conflict of interest are assessed and managed in public organisations support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 diligence should be applied for pre- and post- public employment as well as newly appointed public officials before they take office. ▶ OECD Recommendation, principles and Toolkit, reports on pre & post public employment conflict of interest, on advisory group and lobbying ▶ WB – risk mapping/risk based approach, cooling off period ▶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Art 26-27 ▶ Council of Europe Toolkit Art 8, post-employment restrictions
Foster ing a	Open organisational culture

culture of integrity which is intolerant of conflicts of interest	5. G20 countries should ensure an open and transparent organisational culture in the public sector where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can be discussed freely without fear of reprisal. G20 countries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safeguard the public interest in the recruitment, nomination and promotion of public officials. OECD Recommendation 15, 16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Art 24 Council of Europe Toolkit Art 12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 3.5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rt 7.4
	Averting conflict of interest risks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6.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 procedures are effective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public decision making in order to avoid the capture of public policies. Hence, G20 countries should set criteria for engaging advisory and expert groups, and levelling the playing field for all stakeholders. OECD Recommendation 16, 17 OECD Recommendation on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Raising awareness, building capacity and commitment 7.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sufficient information, guidance, training and timely advice are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upon taking up positions and throughout their careers in order to enable them to identify and manage actual, apparent and potential and apparent according to their level of importance)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For certain key high-level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should be identified and resolved before taking office. OECD Recommendation 17 WB,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Getting the Full Picture on Public Officials.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8.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s a shared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ence G20 countries should encourage th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state owned enterprises,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ir interaction with public officials. G20 High-Level Principles on 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OECD /G20 principles on corporate governance, RBC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3.10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rt 11
Enabling effective	Disclosure,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 9. G20 countries should develop a comprehensive periodic private interest declaration system for senior public officials and those in high-risk positions, that entails appropriate

- 45 -

accountability	verification and audit, tracking and warning system, and make it publicly accessible for transparency and public scrutiny. 10. Countries could be encouraged to support each other in the verification process, facilitating, whenever feasible, the identif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foreign public officials' interests located in their jurisdiction. UNCAC 8.5 OECD Recommendation 6 – 9 WB, asset disclosure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Art 13 Council of Europe Toolkit Art 13 APEC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 3.4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rt 7.1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Getting the Full Picture on Public Officials.
	Enforcement 11. G20 countries should implement adequate mechanisms to resolve identified conflicts of interests, as well as enforcement mechanism for proportionate and timely sanctions to viol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 policies by public officials and all others involved in the violations. OECD 14 WB Council of Europe Toolkit Art 17, 25, 26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 3.2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rt 7.3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Getting the Full Picture on Public Officials.

Selected references

- G20 High-Level Principles on 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www.g20russia.ru/load/781360541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20-oecd-principles-of-corporate-governance-2015_9789264236882-en
- G20 High-Level Principles on 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http://g20.org.tr/wp-content/uploads/2015/11/G20-High-Level-Principles-on-Private-Sector-Transparency-and-Integrity.pdf>
-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https://au.int/sites/default/files/treaties/7786-treaty-0028_-_african_union_convention_on_preventing_and_combating_corruption_e.pdf
- APEC Principles for Financial/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 Council of Europe's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Code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https://rm.coe.int/16805e2e52>

- 46 -

- Council of Europe Legislative Toolkit on Conflict of Interest
-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ttp://www.oas.org/en/sla/dil/docs/inter_american_treaties_B-58_against_Corruption.pdf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ttps://www.unodc.org/documents/brussels/UN_Convention_Against_Corruption.pdf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http://www.oecd.org/governance/ethics/2957360.pdf>
- Post-Public Employment: Good Practices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http://www.oecd.org/gov/ethics/managingconflictinterestinthepublicservice.htm>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Integrity (2017)
<http://www.oecd.org/gov/ethics/Recommendation-Public-Integrity.pdf>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2010).
<http://www.oecd.org/corruption/ethics/Lobbying-Brochure.pdf>
-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3 -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http://www.oecd.org/governance/lobbyists-governments-and-public-trust-volume-3-9789264214224-en.htm>
-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Getting the Full Picture on Public Officials: A how-to Guide for Effective Financial Disclosure:
<https://star.worldbank.org/star/sites/star/files/getting-the-full-picture-on-public-officials-how-to-guide.pdf>
-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Public Office Private Interest:
<https://star.worldbank.org/star/publication/public-office-private-interests>
- World Bank Public Accountability Mechanisms (PAM):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public-accountability-mechanisms>
- World Bank Financial Disclosure Law Library:
<http://publicofficialsfinancialdisclosure.worldbank.org/>